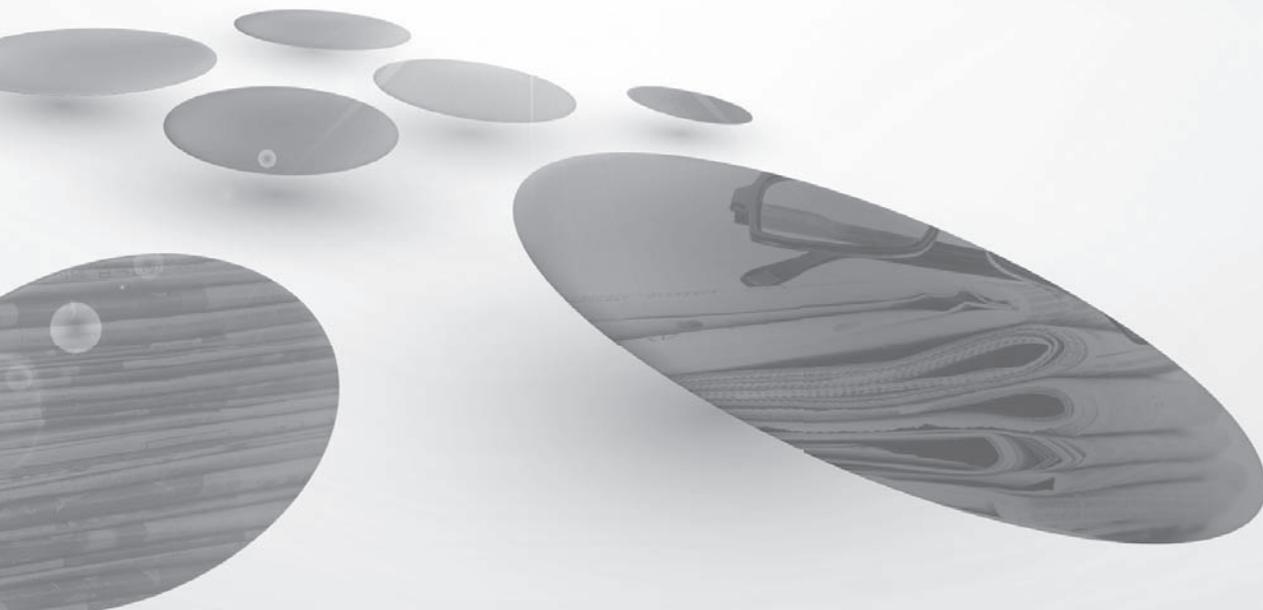




명예와 신용 존중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1.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 2011-1243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1년 11월 19일자 A10면 「대기업 집안 운전기사 “왜 홀대하나” 술취해 난동」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기업 오너 집안에서 10년 넘게 일한 40대 운전기사가 “사람을 홀대한다”며 흥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신춘호 농심 회장의 차남인 신동윤(53) 율촌화학 부회장 집에 흥기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안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신 부회장의 부인 이모(45) 씨의 운전기사다. 경찰은 “안씨는 11년째 이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집안일도 도왔지만, 이 씨가 홀대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신 부회장 집 2층 이 씨의 방에 흥기를 들고 들어가 “내가 일을 그만두든지, 죽어버리든지 해야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5분 정도 난동을 부린 혐의다. 당시 집 안에는 가사도우미가 1층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고, 안 씨가 난동을 부리자 경찰과 사설 경비업체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기업주 부인의 운전기사로 오래 일한 사람이 흥기를 들고 그

부인의 방에 들어가 5분 정도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정작 피의자의 신원은 ‘안모(46) 씨’라고 보호하면서 공익과 무관하게 낭패를 당한 부인의 남편인 대기업주의 실명과 나이, 회사명, 직함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의 명예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